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88 발의연월일: 2020. 1. 6.

발 의 자:이원욱·전혜숙·고용진

송옥주 · 김철민 · 유정주

김민철 • 윤관석 • 홍성국

이용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.

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볼 수 없음.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.

이에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,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

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,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 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아동학대치사)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아동에 한정한다)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1 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 외에 제2조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 죄를 범한 사람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아동에 한정한다)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 외에 제2조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상습범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아동에 한정한다)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.

② 제1항 외에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다 만,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제4조(아동학대치사)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.

제4조(아동학대치사) ① 제2조제4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「영유 아보육법 | 제2조에 따른 영유 아,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 른 유아 또는 '장애인복지 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아 동에 한정한다)을 사망에 이르 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

② 제1항 외에 제2조제4호라목 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 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 제2조제4 제5조(아동학대중상해) ① 제2조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.

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에 따 른 영유아, 「유아교육법」 제2 조에 따른 유아 또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(아동에 한정한다)의 생명에 대 제6조(상습범) 상습적으로 제2조 제6조(상습범) ① 「영유아보육 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 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 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 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 외에 제2조제4호라목 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 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 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.

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<u>유아 또는 「장애인복지</u>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(아동에 한정한다)에 대하여 상습적으 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 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 지 가중한다.

② 제1항 외에 상습적으로 제2 조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

<u>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</u>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